

학생회 간부 승인 규정

제1조 본 대학 학생회의 간부는 본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2조 학생회 간부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 ②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전 학기 성적이 과락이 없어야 하며 평균평점 C⁰(2.0) 이상인자
- ③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④ 전 학기 출석 상황이 80%이상인 자
- ⑤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⑥ 임기 중이라도 전항 및 학생회칙 제8조 3항 위반 시는 간부의 자격을 상실 재선임하여야 하며 장학혜택 등을 전임자가 수혜 받았을 시는 후임자는 제외된다.

제3조 학생회 간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 학생회 각부서장은 학생회장이 지명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5조 학생회장은 선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조의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